

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5 일
개인택시 운송사업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	
	택시운전 자격증번호	면허연월일	
	사업면허번호	자동차번호	
대리운전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	
	택시운전 자격증번호	발급기관	
대리운전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개월간)		
대리운전사유			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개인택시운송사업자)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	1. 택시운전자격증 2. 진단서(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	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	1.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(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) 2. 택시운전자격증 3. 반명함판 사진(3cm×4cm)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(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) 4.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)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대리운전자에 관한사항	1. 자동차운전면허증 2. 운전경력증명서(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)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대리운전자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)
 -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
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3조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(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으로 선출된 경우. 다만,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, 조합원 수, 급여수준,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
 - 「도로교통법」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(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)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
-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5조): 1차는 운행정지 60일, 2차는 사업면허취소
-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요건을 갖춰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